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

1982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
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#### 1. 제안이유

가. 기금의 존속기한('17.12.31)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**기금의 존속기한 연장** 필요

- ※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: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<u>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</u>하여야 한다 ③ <u>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</u>하여 <u>5년의 범</u>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.
- 나. '17. 4. 1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
  - 조례 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
    - 2017년 12월 31일 →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
- 나. '17.4.1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
  - 조례 제9조(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)제2호
    - 민생경제과장 → 공정경제과장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·강화 규제사항 없음
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: 해당 없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해당 없음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- 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원안동의
- (6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: 원안동의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국·국 협의 사항: 해당 없음

#### 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17.6.22. ~ 7. 22.) 결과: 의견 없음
- (2) 신、구조문 대비표: 별첨
- (3) 규제심사 결과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(4) 비용추계 등 자료: 별첨

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본문 중 "2017년 12월 31일"을 "2022년 12월 31일"로 한다.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공정경제과장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4. 신 · 구조문 대비표

### 신 •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	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
존속기한은 <u>2017년 12월 31일</u> 까	<u>2022년 12월 31일</u>
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	,
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	
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	
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
제9조(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) ① (생	제9조(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, 위	②
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사람으로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민생경제과장	2. 공정경제과장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##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 :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

3. 미첨부 사유 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에 해당

- 기금 존속기한 종료 예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 :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이정순(2133-5550)